

2006. 6. 20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 
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<제149회 임시회>

달성군의회 전문위원 장윤석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 
및 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6월 16일
- 제출자 : 달성군수 (재난안전관리과장)
- 검토일자 : 2006년 6월 19일

### 2. 제정이유

- 2005. 8. 17일자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면 개정·  
시행됨에 따라 “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” 제도 도입
-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동법 제4조  
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「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
위원회」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
조례로 정하고자 함

### 3. 검토의견

#### ○ 주요내용은

- 검토위원회의 기능 (안 제2조)
  -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, 재해영향, 재해저감계획 등의 사항 검토
- 검토위원회 구성 및 임기 (안 제3조, 제4조)
  -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구역 군수가 되며, 대상사업의 검토사항을 검토위원회에 협의를 요청
  -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함 (중앙은 40인 이상 80인 이하)
  -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음
- 검토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,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회의소집 (안 제6조)

- 검토의견 제출 (안 제8조, 제9조)
  - 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제출함
  - 검토위원 중 당해 사업의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대상사업에 참여 불가
-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(안 제12조)

## ○ 검토결과

-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(소방방재청)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됨

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